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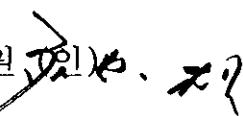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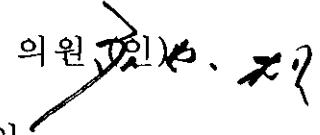
2005. 9.

수 신 :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

제 목 :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동의

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 
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 
 발의합니다.

붙 임 :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 
 대한 동의 1부.

발의자 : 유경상 의원   
 외 6인 

기 안	전문위원	교 사	위 원 상
상기집	유경상		

(찬성자 서명 별첨)

##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동의

제안년월일 : 2005. 9. 7.

제 안 자 : 유경상 의원외 1인

### 1. 주문

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혁신도시를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민·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진력하고 있음에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는 등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람.

### 2. 제안이유

정부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과 산·학·연·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하여 미래 자족형 혁신도시의 유치 및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.

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 
특별조례안 동의 서명서

성 명	서명 또는 날인	비 고
윤경상	↑	
이동수	↑	
윤성열	↑	
이종호	↑	
이종범	↑	

**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 
특별조례안 동의 서명서**

성 명	서명 또는 날인	비 고
이      죽호	李	
이      경완	李	

##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제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혁신도시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행·재정적인 지원과 산·학·연·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미래 자족형 혁신도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혁신도시”라 함은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산·학·연·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주거·교육·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도시를 말한다.
2. “입주기관 임직원”이라 함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의거 충북으로 배정된 기관중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사항)** 제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부지제공, 도로, 주차장, 상·하수도, 정보통신 인프라 등 기반시설공사 또는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
2. 입주기관 임직원에 대한 전원주택단지 조성
3. 입주기관 임직원에 대한 임대주택 건립
4. 이주에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 및 인·허가의 대행

5. 입주기관 임직원이 시 문화·체육·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감면하고, 제천시보건소에서 진료를 할 경우에는 「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」 제8조에 의한 진료비 감면
6. 「폐기물관리법」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 감면
7. 입주기관 임직원 자녀에 대한 서울 제천학사 우선입주 혜택 부여
8. 시 소유의 재산중 주말농장 등 경작을 목적으로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부
9. 혁신도시를 운영·관리하는자의 상·하수도 사용료 감면
10.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학술연구 각종 사업 등 발굴·육성
11. 기타 혁신도시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위원회 운영과 부지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제1항 제4호 및 동 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 설치·운영) 시장은 혁신도시에 대한 효율적·체계적인 지원·육성을 위하여 혁신도시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50명 이내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27조의2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혁신도시 유치가 확정 되었을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8조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②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“제2항” 을 “제3항” 으로 하고 “제2항”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 제2조에 의한 입주기관 임직원 자녀

## 신 구 조 문 대 비 표

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

현 행	개 정
<p>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.....</p> <p>.....</p> <p>1.-3. (생략)</p> <p>4 (신설)</p>	<p>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.....</p> <p>.....</p> <p>1.-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</u>  <u>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</u>  <u>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</u>  <u>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</u>  <u>할 수 있다.</u></p>

## 신구조문 대비 표

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

현 행	개 정
<p>제5조(입사생의 자격)</p> <p>① (생략) (신설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입사생의 자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 에 관한 특별조례 제2조에 의한 입주기관 임직원 자녀</p> <p>③ (생략)</p>